





# 보도자료



# 6.3(수) 14:00부터 보도가능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			
책 임 자	남동우 팀장 (02-2156-9604)	담 당 자	진형구 사무관 (02-2156-96	570)
배 포 일	'15. 6. 3(수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총 3매

# 제 목 : <u>빅데이터를 활성화하여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</u> 동반성장 토대 구축

- 빅데이터 활용 제약요인을 해소
  - 금융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 업무에 활용가능한지가 불명확 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
- 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입을 도울 수 있는 기반 마련
  - 혁신 기술을 가진 핀테크 기업이 금융권에 진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경쟁과 협력을 유도

# 1. 추진 배경

- 가. 빅데이터 활용 현황
- □ (금융권) 빅데이터는 핀테크 발전의 한 축이나,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은 초기단계
  - 외국은 모든 업권에서 빅데이터가 새로운 방법으로 다양하게 활용
     되는 반면, 우리나라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이 한정
  - 외국의 경우 빅데이터가 수익모델로 연결되고 있지만, 우리나라의
     경우 빅데이터가 수익모델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
  - 외국 금융회사는 실시간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업에 활용하고 있지만,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하지 못함
- □ (핀테크) 외국의 경우, 핀테크 기업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,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사례가 많지 않음

나. 빅데이터 활성화 필요성
□ 외국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이 새로운 경제의 성장동력이 되고 있음
□ 금융정보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하면 핀테크 기업과 금융권이 동반 성장
□ 금융회사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시장개척, 새로운 수익사업 발굴 등 가능
2. 빅데이터 활성화 제약요인
<ul><li>□ (법령) 신용정보법령상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비식별화하여 빅데이터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불명확</li></ul>
<ul><li>□ (인프라 미흡) 핀테크 기업은 금융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 확보가 어려워 금융업 진출의 어려움으로 작용</li></ul>
□ (비식별화 지침 미비) 비식별화 지침이 없어 비식별화하는데 어려움
3.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
가. 법령상 제약요건 해소
<ul> <li>가. 법령상 제약요건 해소</li> <li>&lt; 신용정보 범위 명확화 &gt;</li> <li>□ (현황·문제점)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는 다섯 가지로 구분*되고, 이중 하나에 해당되면 비식별과 무관하게 신용정보로 봄</li> </ul>
<ul> <li>가. 법령상 제약요건 해소</li> <li>&lt; 신용정보 범위 명확화 &gt;</li> <li>□ (현황·문제점)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는 다섯 가지로 구분*되고, 이중 하나에 해당되면 비식별과 무관하게 신용정보로 봄</li> <li>* 식별정보(다른 정보와 결합), 거래내용, 신용도, 신용능력, 공공정보</li> </ul>
<ul> <li>가. 법령상 제약요건 해소</li> <li>&lt; 신용정보 범위 명확화 &gt;</li> <li>□ (현황·문제점)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는 다섯 가지로 구분*되고, 이중 하나에 해당되면 비식별과 무관하게 신용정보로 봄</li> </ul>
<ul> <li>가. 법령상 제약요건 해소</li> <li>&lt; 신용정보 범위 명확화 &gt;</li> <li>□ (현황·문제점)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는 다섯 가지로 구분*되고, 이중 하나에 해당되면 비식별과 무관하게 신용정보로 봄</li> <li>* 식별정보(다른 정보와 결합), 거래내용, 신용도, 신용능력, 공공정보</li> </ul>
<ul> <li>가. 법령상 제약요건 해소</li> <li>&lt; 신용정보 범위 명확화 &gt;</li> <li>□ (현황·문제점)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는 다섯 가지로 구분*되고, 이중 하나에 해당되면 비식별과 무관하게 신용정보로 봄         <ul> <li>* 식별정보(다른 정보와 결합), 거래내용, 신용도, 신용능력, 공공정보</li> <li>○ 비식별정보를 신용정보로 볼 경우 빅데이터 활용시마다 동의 필수</li> </ul> </li> </ul>
<ul> <li>가. 법령상 제약요건 해소</li> <li>&lt; 신용정보 범위 명확화 &gt;</li> <li>□ (현황·문제점)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는 다섯 가지로 구분*되고, 이중 하나에 해당되면 비식별과 무관하게 신용정보로 봄         <ul> <li>* 식별정보(다른 정보와 결합), 거래내용, 신용도, 신용능력, 공공정보</li> <li>○ 비식별정보를 신용정보로 볼 경우 빅데이터 활용시마다 동의 필수</li> <li>□ (개선방안) 시행령에서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</li> </ul> </li> </ul>
<ul> <li>가. 법령상 제약요건 해소</li> <li>&lt; 신용정보 범위 명확화 &gt;</li> <li>□ (현황・문제점)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는 다섯 가지로 구분*되고, 이중 하나에 해당되면 비식별과 무관하게 신용정보로 봄         <ul> <li>* 식별정보(다른 정보와 결합), 거래내용, 신용도, 신용능력, 공공정보</li> <li>○ 비식별정보를 신용정보로 볼 경우 빅데이터 활용시마다 동의 필수</li> <li>□ (개선방안) 시행령에서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</li> </ul> </li> <li>&lt; 비식별정보 활용가능여부 명확화 &gt;</li> <li>□ (현황・문제점)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동의받은 목적으로만</li> </ul>
<ul> <li>가. 법령상 제약요건 해소</li> <li>&lt; 신용정보 범위 명확화 &gt;</li> <li>□ (현황·문제점)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는 다섯 가지로 구분*되고, 이중 하나에 해당되면 비식별과 무관하게 신용정보로 봄         <ul> <li>* 식별정보(다른 정보와 결합), 거래내용, 신용도, 신용능력, 공공정보</li> <li>○ 비식별정보를 신용정보로 볼 경우 빅데이터 활용시마다 동의 필수</li> <li>□ (개선방안) 시행령에서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</li> </ul> </li> <li>&lt; 비식별정보 활용가능여부 명확화 &gt;</li> <li>□ (현황·문제점)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동의받은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나, 비식별화시 동의 목적 외 이용가능(예외규정)</li> </ul>

#### 나. 빅데이터 활성화 인프라 구축

- □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금융권, 핀테크 기업 등의 빅데이터 업무 활용을 지원
  - 금융회사가 **새로운 서비스를 제공**할 수 있도록 **마케팅, 상품개발 등 지원**
  - 비식별정보를 **핀테크 기업에 제공**하여 **핀테크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지원**

#### 다. 비식별화 지침 마련

□ 금융회사 등이 준거할 수 있도록 협회 주관으로 비식별화 지침 마련

### 3. 향후 계획

- □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제약사항은 조속히 해소
  - **신용정보범위 명확화** :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(신용정보법 시행일인 9.12일까지 완료)
  - 비식별정보 활용가능여부 명확화 : 유권해석 답변
- 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'16.3월 이전에 조속히 설립
- □ 비식별화지침은 협회 공동으로 9월말까지 마련·시행

## 금융개혁회의(6.3)시 주요 논의사항

- □ 금융회사의 **비식별화 지침 마련**에 대해서는
  - (제1안) 금융회사가 **자율적으로 비식별화**하는 방안, (제2안) **비식별화 지침을 제정**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
  - 비식별화 지침을 정해줄 경우 금융회사 자율성을 침해하므로,
     지침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으나,
    - 빅데이터 활용의 초기단계에서는 비식별화 지침이 있어야만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협회 주도로 네거티브 방식의 비식별화 지침을 제정하는 2안으로 추진키로 하였음
- ※ 상세한 내용은 별첨「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」참조

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http://www.fsc.go.kr

